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우)135-092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06 동화빌딩 3층 전화) 2188-6967 팩스) 0502-777-6967

문서번호 SW협회 제2014 - 200호 제도운영팀 팀장 한승희 담당 이재권 2014년 7월 7일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SW사업자신고 담당자

## 제 목 : SW사업자신고확인서 발급 중지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거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고시 제2013-151호)

- 제8조 (사업자의 변경신고)

- 제10조 (신고확인서의 발급 등)

3. 귀 사는 상기 근거에 의해 최근 2개년간 변경신고가 이행되지 않아 2014년 7월 9일부로 SW사업자신고 확인서 발급이 중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4. 또한, 신고확인서 발급이 제한된 사업자도 최근 재무현황으로 변경신고를 이행할 경우, 신고확인서 발급제한이 자동 해지되오니 첨부된 [소프트웨어사업자 변경신고 안내]를 참고하셔서 변경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변경신고 안내 1부. 끝.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 장 조 현 정

직인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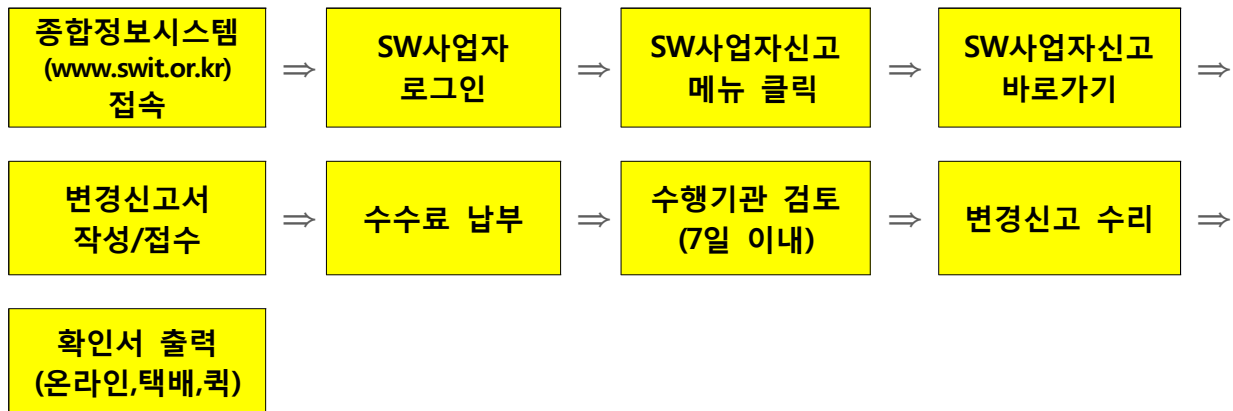
# 소프트웨어 사업자 변경신고 안내

## 1 변경 신고대상 및 제출서류

신고대상		제출서류
회사명, 주소지, 대표자 변경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무현황 변경	개인사업자	· 직전년도 표준 재무제표 1부 (국세청 홈택스 참조)
	법인사업자	· 직전년도 표준 재무제표 1부 (국세청 홈택스 참조)
		공공기관 입찰 시
	공공기관 미입찰 시	·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변경 신고시 ZIP 파일로 첨부가능

## 2 신고 절차



※ 신고의 접수부터 수리까지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법정 근무일 기준으로 7일 이내입니다.

## 3 문의처

- 제도운영팀 이재권책임, 김형준책임 (02-2188-6967)
- E-Mail : [yoanna@sw.or.kr](mailto:yoanna@sw.or.kr), [khj@sw.or.kr](mailto:khj@sw.or.kr)

[첨부]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첨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해당여부

현 황	해당여부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가.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N" 체크)	Y / N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 해당여부

현 황	해당여부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가? [중소기업의 경우 "N" 체크]	Y / N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중소기업의 경우 "N" 체크]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 호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Y / N
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Y / N
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Y / N
라.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Y / N
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Y / N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같은 종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중소기업의 경우 "N" 체크]	Y / N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추후 신청 당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영 제9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명될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